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



법원행정처

수신자 임그루(36322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다세대주택
A동 1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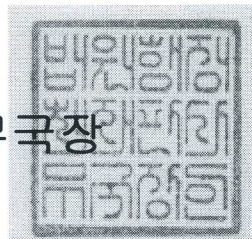
경유

제목 민원회신(임그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6. 12. 14. 신청번호 : 1BA-1612-077433)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확정된 본인의 행정사건(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합니다.
3. 그리고 정부세종청사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우편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 처로 이첩받아 대법원 재판사무국에서 회신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재판사무국장



법원주사보

안상기

법원사무관

이건웅

과장

방웅석

국장

01/12
심재금

협조자

시행

종합민원과-549

(2017.01.12.)

접수

()

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423

/전송 02)536-0296

/ @scourt.go.kr

/ 공개